

## 교원연구년제 규정

제정 : 2011.07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2.06.01

개정 : 2014.05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전임교원이 국내·외에서의 연구 활동 및 산업체연수에 전념하여 전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원 연구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0.03.01.>

제2조(산업체연수) ① 산업체연수는 일정 기간동안 해당전공과 관련된 국내 산업체기관으로 파견되어 산업현장의 기술지도, 신기술습득 및 실무연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  
② 이하 “교원연구년”은 교원연구년과 산업체연수를 포함하여 칭한다.

제3조(자격) ① 연구년 해당 교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된 후 계속하여 6년 이상 근속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10.16.>  
② 연구년제 2회 이상 해당되는 교원의 자격은 전회 연구년이 종료된 후 최소한 6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한다.  
③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 
④ 교원업적평가 C등급 이하 교원과 과원이 있는 학과의 교원은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4조(인원의 제한) ① 연구년 해당교원의 수는 전체교원의 1/20 이내로 한다.  
② 각 학과(계열)의 연구년 해당 교원의 수는 본 규정에 의한 연구년 해당 교원과 법인 「정관」 제40조에 의한 휴직, 해외여행 및 파견 등 매 학기 학교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합하여 학과(계열) 교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과(계열)의 교원수가 3명 이내인 경우 연구년 교원수를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4.05.01., 2014.11.01., 2021.12.01.>

③ 학과(계열)의 교과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예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교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5.01.>

제5조(신분) 연구년 중인 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처우) ①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는 학생지도비를 제외한 기본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2.06.01.>

② 연구년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연구년의 기간과 시효) ① 연구년 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, 장기는 1년, 단기는 6개월로 한다. <개정 2014.05.01.>

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해당기간만 적용되며, 이중 일부를 연기 또는 이월하여 활용할 수 없다.

제8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최소한 연구년 부여시기 4개월 전까지 학과(계열)장을 경유,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05.01.,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1. 교원연구년 허가신청서 - <별표 1>
2. 연구(연수)계획서 - <별표 2>
3. 강의대체 계획서 (소속 학과(계열)장이 작성) - <별표 3>
4. 기타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② 교무처장은 교원연구년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년 부여시기 3개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연구년 부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③ 교원연구년제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학 발전과 학과 교육과정으로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교원연구년(산업체연수)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수로 한다. 다만, 교원연구년(산업체연수)평가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<삭제 2014.11.01.>
2. <삭제 2014.11.01.>
3. <삭제 2014.11.01.>
4. <삭제 2014.11.01.>

④ 총장은 대학교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교원에게 제4조제1항의 제한인원에 추가하여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제9조(연구활동의 범위) 연구년 중인 교원은 국내외에서의 연구활동은 할 수 있으나, 국

내 타 대학교 출강 또는 연구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다.

- 제10조(재직의무)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학기에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수업준비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연구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비 지급) 연구년이 부여된 교원에게도 교내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2조(연구실적 제출)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(연수)결과 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, 연구년 교원은 6개월 이내에 논문을 투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- ② 제1항의 논문에 해당하는 기타 실적물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연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, 교비연구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제13조(휴직과의 관계) ① 법인 「정관」 제40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이를 감하고 연구년 부여시기를 계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② 휴직 중인 교원은 제3조에 해당하여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14조(해외여행 및 파견과의 관계)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 및 국내·외 파견과 연구년과의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6개월 이상 연구목적으로 해외여행 또는 국내·외에 파견되는 교원 : 해당 기간에 한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연구년 자격이 되지 아니한 교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상 연구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내·외 기관에 파견될 경우의 연구년 부여자격 : 복직한 시기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3. 연구목적의 해외여행이 6개월에 미달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학기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: 연구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15조(교원연구년제 심의위원회)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16조(구성) ① 당연직으로 교무처장, 미래전략처장, 사무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③ 부위원장은 입학학생취업처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제1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2. 산업체연수년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3. 학년도별 학기별 연구년 대상인원의 결정 및 선정
4.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회의의 의결)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교원 (연구년, 산업체연수) 허가 신청서

신청학과	학과장

교학처	담당	팀장	처장	총장

신청자	성명	학과	직위
	보직명	임용일자	재직기간      년 월
	거주지	이동전화	생년월일
	과거 연구년, 휴직, 파견 이용실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E-mail
연구년 신청기간	20    학년도    학기 (    .    .    ~    .    .    ) * 개월		
목적 계획			
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의 교육 여부			
연구비 수혜여부 및 조달 계획			
위와 같이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연구년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			
성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			
대원대학교총장 귀하			

※ 첨부서류 : 1.연구계획서 1부    2. 강의대체계획서(학기별)1부    3. 기타 증빙서류 1부

[별표 2]

## 연구(연수)계획서

성명	학과		직위	
연구(연수)과제명				
연구의 필요성 (목적)				
연구일정 및 세부계획				
연구방법 개요				
학과 교육과정 활용 및 기대효과				
기타 참고사항 (연구장소, 첨부자료 등)				
소요경비 계획 (단위 : 천원)	본인부담	외부기관,산업체	기타	계

※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함

[별표 3]

### 강의대체 계획서

성 명	학 과	직 위	
해당학기	00학년도 0학기		
담당과목 및 시수			
강의 대체 계획			
참고사항 및 요청사항			
위와 같이 본 학과 소속교원의 연구년제에 따른 강의대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20   년   월   일 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span>0000학과장</span> <span>(인)</span> </div>			



[별표 4] 산업체 연수자에 한함

## 산업체 연수 결과 보고서

연수과제					
연수결과물					
연수기간	년    월    일 ~		년    월    일		
연 수 교 원	학과(부)명		성 명	(인)	
	전화번호		휴대전화		
	E - Mail				
연 수 산 업 체	산업체명				
	주 소				
	연수부서		담당자 직위/성명		
	전화번호		Fax번호		

## 1. 연수 개요

- 가. 연수 목적(연수결과물 관련)      나. 연수 산업체 일반 현황  
다. 연수산업체 선정 과정

## 2. 연수 내용

- 가. 연수 내용 및 실적      나. 연수자를 위한 산업체의 지원 내용 등

## 3. 연수 성과 및 활용 계획 (기대효과)

- (예)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, 산학 공동연구, 기술지도, 제품 공동개발 계획  
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, 기술습득, 연구과제 추진  
대학교 자체 연수성과 발표회 등

## 4. 제안 및 건의

- 가. 연수 문제점 및 애로사항      나.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

붙임 : 연수결과물    부.

[별지서식 1]

교원연구년(산업체연수) 평가표						
신청자	학 과		성 명		직 위	
	보직명		임용일자		생년월일	
<b>평 가 내 용</b>						
구분	평가항목	세부평가		평가점수		
기본 요건 평가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 근속년수	10년 이상 5점, 6년 이상 3점		5	•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위별 적용 점수	교수 5점, 부교수 3점		5	•	3
	<input type="checkbox"/> 과거 연구년, 파견, 휴직 여부	없음 5점, 있음 3점		5	•	3
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재직교원수(1/4이내) 여부	1/4이내 5점, 1/4초과 3점		5	•	3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년기간 강의 대체 마련	있음 5점, 없음 0점		5	•	0
	<b>계 (25점)</b>					<b>점</b>
연구 계획 평가	평가항목	평가의견		평가점수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목적 계획(연구의 필요성)	매우적절, 적절, 보통, 부족, 보완		5	•	4 • 3 • 2 • 1
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의 교육	매우적절, 적절, 보통, 부족, 보완		5	•	4 • 3 • 2 • 1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비 수혜여부 및 조달계획	매우적절, 적절, 보통, 부족, 보완		5	•	4 • 3 • 2 • 1
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교육과정 활용 및 기대효과	매우적절, 적절, 보통, 부족, 보완		10	•	8 • 6 • 4 • 2
<b>계 (25점)</b>					<b>점</b>	
교원 업적 평가	평가항목	세부평가내용		평가점수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통 부문	신입생, 재학생 총원율 등		10	•	8 • 6 • 4 • 2
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부문	강의평가, 학생지도 등		10	•	8 • 6 • 4 • 2
	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협력활동 부문	취업률, 산학협력실적 등		10	•	8 • 6 • 4 • 2
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활동 부문	연구논문실적 등		10	•	8 • 6 • 4 • 2
	<input type="checkbox"/> 봉사기타활동 부문	학과 및 대학발전관련 실적 등		10	•	8 • 6 • 4 • 2
<b>계 (50점)</b>					<b>점</b>	
<b>합계 (100점)</b>					<b>점</b>	
<p>교원 연구년제 평가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·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4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: (서명)</p>						
<p style="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대원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			